

의안번호	2212323
의 퇴 인	용혜인의원
회 답 일	2025.10.30.
추계번호	25B4641

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4조 8,085억원, 2030년 34조 6,03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3조 5,352억원(연평균 34조 7,070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(국 비) 86조 7,676억원(연평균 17조 3,535억원)
- (지방비) 86조 7,676억원(연평균 17조 3,535억원)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<농어촌기본소득 지급> 국가 등의 책무 (안 제3조),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(안 제13조),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(안 제18조)	348,085	347,582	347,079	346,567	346,039	1,735,352	347,070
국비(50%)	174,042	173,791	173,539	173,283	173,019	867,676	173,535
지방비(50%)	174,042	173,791	173,539	173,283	173,019	867,676	173,535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,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·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)	행정안전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·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7조(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)	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둔.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	의무규정
4	안 제12조(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둔	의무규정
5	안 제13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)	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함	의무규정
6	안 제18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)	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지급함	의무규정
7	안 제28조(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행정안전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·관리를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추계여부
1	안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	○	
2	안 제13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)		
3	안 제18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)		
4	안 제6조 (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—	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5	안 제7조 (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)	—	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처 내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6	안 제12조(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)	—	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·도 내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7	안 제28조(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×	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축 대상 시스템 규모 및 구축·운영·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제18조제1항¹⁾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(연간 360만원)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이때,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 제13조²⁾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‘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 개인’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‘전국 읍·면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’으로 가정함
 -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, ‘농촌’ 지역은 ‘읍·면 지역’으로 규정하고 있고, ‘어촌’은 하천·호수·바다와 인접하거나 어항배후 지역 중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·면의 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의 범위

지역 구분		정의
농어촌		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	농촌	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 5. “농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가. 읍·면의 지역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	어촌	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 6. “어촌”이란 하천·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가. 읍·면의 전 지역 나. 동의 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자료: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1) 제18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) ① 농어촌기본소득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.
- 2) 제13조(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) ①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하여 주소지를 해당 농어촌 지역에 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.

-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읍·면 지역 외의 농어촌 범위 및 농어촌 거주 주민 수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추계대상 농어촌의 범위는 ‘읍·면 지역’으로 한정함
- 또한, 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라 매달 수급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의 유입에 대한 통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해당 내용은 본 비용추계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음
-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정지 사유, 수급권의 상실, 환수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가 부재하여 대상자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
 -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중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자,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인 자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예측하기 곤란하여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
- 제정안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

-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통계청의 「인구총조사」 결과에 따라 총인구 수 대비 읍·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(18.7%)을 바탕으로 전망
 - 이때, 추계기간 동안 총인구 수 대비 읍·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(18.7%)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통계청 「인구총조사」에 따른 읍·면부 인구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전국 총인구(A)	51,829,136	51,738,071	51,692,272	51,774,521	51,805,547	51,767,909
읍·면부 인구 (B=C+D)	9,763,833	9,718,290	9,605,378	9,667,471	9,738,940	9,698,782
-읍부(C)	5,113,052	5,183,834	5,098,892	5,131,418	5,207,049	5,146,849
-면부(D)	4,650,781	4,534,456	4,506,486	4,536,053	4,531,891	4,551,933
총인구 대비 읍·면부 인구 비율(E=B/A)	18.8%	18.8%	18.6%	18.7%	18.8%	18.7%

자료: 통계청 「인구총조사」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에서 발표된 총 인구 수에 18.7%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산출함

[표 4]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총인구(A, 명)	51,609,121	51,534,551	51,459,877	51,384,052	51,305,713
총인구 대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비율(B)	18.7%				
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 자(C=A×B, 명)	9,669,034	9,655,063	9,641,073	9,626,867	9,612,190

주: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총인구 수 대비 읍·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(18.7%)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

자료: 통계청 「인구총조사」 및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

□ 1인당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360만원(월 30만원)으로 가정

- 제정안은 연간 360만원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,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제정안에 규정된 연간 하한 금액인 360만원을 12개월로 균분(월 30만원)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때,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다. 분담률 등

□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함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·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명시적인 분담률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을 50:50으로 가정함

라. 추계결과

□ 추계 결과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3조 5,352억원(연평균 34조 7,070억원)으로 추계됨

- (국 비) 86조 7,676억원(연평균 17조 3,535억원)
- (지방비) 86조 7,676억원(연평균 17조 3,535억원)

[표 5]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(A, 천명)	9,669	9,655	9,641	9,627	9,612	—	—
1인당 연간 지급액 (B, 백만원/명)	3.6	3.6	3.6	3.6	3.6	—	—
추가재정소요 (C=A×B, 억원)	348,085	347,582	347,079	346,567	346,039	1,735,352	347,070
국비 (D=C×50%)	174,042	173,791	173,539	173,283	173,019	867,676	173,535
지방비 (E=C×50%)	174,042	173,791	173,539	173,283	173,019	867,676	173,535

주: 1.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(읍·면 거주자)는 총 인구의 18.7% 수준으로 가정
 2. 1인당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360만원(월 30만원)으로 가정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3.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
 자료: 통계청 「인구총조사」 및 「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·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,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 -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지급대상자 수, 지급단가,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(2025년 기준)

구분	지자체	지급 시작	지급대상	지급규모	지급방법
농업인 수당	경기도	'21~	농업인	'21년~: 농업인당 5만원/월 (60만원/년)	지역화폐
	강원도	'21~	농림어가	농가당 70만원/년	지역화폐
	충청북도	'22~	농가	'22년: 농가당 50만원/년 '23~: 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충청남도	'20~	농업인	'20~'21년: 농가당 80만원/년 '22년~: 1인 농가 80만원/년, 2인 가구 이상 45만원/1인	지역화폐
	전라북도	'20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전라남도	'20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경상북도	'22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경상남도	'22~	농가	농가당 30만원/년 (공동경영주 60만원/년)	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(신용·체크카드)
	제주도	'22~	농업인	농업인당 40만원/년	지역화폐
	울산광역시	'23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현금 지급
	광주광역시	'23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세종특별자치시	'23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지역화폐
	인천광역시	'24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현금 지급
	부산광역시	'25~	농가	농가당 60만원/년	현금 지급
어업인 수당	인천	'24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현금, 지역화폐 (카드, 상품권 등)
	경기(화성시)	'23	어민	어민당 60만원/년	
	전라북도	'21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전라남도	'20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충청북도	'23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충청남도	'20	어가	1인 어가 80만원/년,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/1인	
	강원도	'21	어가	어가당 70만원/년	
	경상북도	'22	어가	가구당 60만원/년	
	경상남도	'22	어민	경영주당 30만원/년	
	울산	'24	어가	어가당 60만원/년	
	제주도	'22	어민	어민당 40만원/년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(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)